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5760 손해배상(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도년, 이명희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담당변호사 김취영, 허지연
변 론 종 결 2026. 7. 9.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2026. 8.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출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제조업·수출입업·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의료기기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나. 피고 C은 2022. 6. 30.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E 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한 이 사건 프로그램 복제본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하였고, 원고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이후인 2022. 8. 18. 이를 삭제하였다.

다. 피고 C은 2023. 4. 17.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약656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2022. 10. 5.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F [] G [] 호 ㈜B [] 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30. 위 ㈜B []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MAC주소 1 생략) [] 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은 피해자 A [] ([])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Cad 등 프로그램인 'D []'를 권한없이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



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무실 내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점, ②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의료기기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의료기기 설계 업무에도 사용될 수 있는 점, ③ 피고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디자인 업무 분야를 배우고 싶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은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무단 복제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거나 직원들의 컴퓨터에 무단 복제한 컴퓨터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를 위한 보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인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의 사용료 중 일부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이어서 실제로 원고는 사용자의 요



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모듈만을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사용료 역시 개별 모듈별로 또는 수개의 모듈이 합쳐진 패키지별로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였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필요한 모듈만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하위 모듈 중 피고 C이 불법 복제·사용한 모듈의 종류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③ 사용자가 원고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 1년간 유지보수비가 포함된 금액을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고, 영구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다. 저작권법 제126조의 손해액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000원으로 정한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



어 있는데, 피고 C이 불법 복제하여 사용한 모듈의 종류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②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대체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오래된 버전의 사용료가 하락하게 되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어떤 버전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 모듈인 'H'의 1년 구독형 라이선스 가격은 약 500만원인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날짜와 이를 삭제한 날짜 사이의 간격은 2개월이 되지 아니한다.

⑤ 원고는 피고 C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어떻게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결과물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2. 8.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2022. 6. 3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손해액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2. 8. 18.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희